

-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문화관광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문화관광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국가유산기본법(24.5.17.)」 시행과 이에 따른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6건의 용어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및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문화재’를 문맥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제6조 및 안 제9조~제16조의 ‘문화재’ 용어를 문맥에 따라 ‘국가유산’, ‘향토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2조에서 인용한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 인용한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5조의2에서 인용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 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상위 법률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별지 1~5호 서식에 포함된 ‘향토문화재’ 용어를 ‘향토유산’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비대상).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 10. 2일부터 10. 23일까지 21일간 입법에 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4. 11.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체제’에 맞추어 ‘문화재’ 용어 및 관련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의 개정을 추진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4118
----------	----------

제출년월일: 2024. 11. 6.
제출자: 달서구청장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2024.5.17.)」 제정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 정비

- ‘문화재’⇒국가유산, ‘향토문화재’⇒향토유산 용어 및 인용된 법률·자치법규 정비 등

나. 일괄개정 조례안(6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제명, 안 제1조~ 제6조 및 안 제9조~제1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제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 제9조, 안 제3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 ~10. 23.(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3) 비용추계서: 비대상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이하 “향토문화재”라 한다)”를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향토문화재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별지 제1호 서

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향토문화재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향토유산이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시지정문화재”를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으”로, “향토문화재의”를 “향토유산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는”을 “향토유산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문화재와”를 “향토유산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향토문화재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재가”를 “향토유산이”로 한다.

제13조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향토문화재 보존경비 지원신청서”를 “향토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6조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국가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문화재 및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 지정서

- 명 칭 :
- 소재지 :
- 수 량 :

위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향 토 유산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	소 유 자		관 리 자	
							주소	생년월일	주소	성명
성 명										

2. 구청장이 향토문화재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보급 및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재의 조사
2.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6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향토문화재의 조사·심의가 완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2. ----- 향토유산-----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향토유산-----

-----.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

-----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

제5조(심의사항) -----
-----.

1. 향토유산-----
2. 향토유산-----
3. 향토유산-----

4.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 -----

-----.

③ ----- 향토유산-----
-----.

④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향토문화재 관련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재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문화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향토유산 -----
-----.

⑤ -----
----- 향토유산 -----

--.

제9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을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② ----- 향토유산으-----

----- 향토유산이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정문화유산으-----
----- 향토유산의 -----
-----.

제10조(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 향토유산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2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제12조의2(변경신고) ①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가 멸실, 도난, 훼손,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
----- 향토유산-----

-----.

② ----- 향토유산은

--.

제12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

-----.

1. 향토유산-----

--.

2. ----- 향토유산-----

-----.

3. 향토유산과 -----

-----.

제12조의2(변경신고) ① 향토유산의 ----- 향토유산이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점검) ----- 향토유

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수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보수사업을 감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

향토유산-----
-----.

② ----- 향토유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③ -----
-- 향토유산 -----

-----.

제16조(표창) ----- 향토유산 -

-----.

【관 계 법 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리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 ⑫ (생략)